경영유의사항 공개안

1. 금융회사명 : 한국자산신탁㈜

2. 제재조치일 : 2026. 1. 28.

3. 조치내용

제재대상	제재내용
기관	경영유의사항 5건

4. 조치대상사실

가. 경영유의사항

(1) 신탁계정대 회수예상가액 산정방식 개선

□ 한국자산신탁㈜(이하 '회사')는 회수예상가액 산정시 외부감정평가 대상 여부 판단 등 세부 운영 기준을 마련하고 있지 않은바*,

○ 중요 사업장에 대한 외부감정평가를 고려하는 한편, 자체 회수예상가액 산정시 적용할 세부 기준(추정치 산정 등)을 마련·시행할 필요가 있음

(2) 재산상 이익 수령내역 기록유지 관리 강화

□ 회사는 재산상 이익을 제공·수령하는 경우 제공목적, 제공내용, 제공일자 및 제공받는 자 등에 대한 기록을 유지하여야 함에도

제공내역의 경우 전산으로 관리하는 반면, 수령내역의 경우 기록유지를 위한 전산시스템을 갖추지 않고 관리도 하지 않고 있는바,

○ 수령내역의 경우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여 기록유지하고 신고내역에 관한 검증 및 관련 임직원 교육도 강화할 필요가 있음

(3) 내부정보 유출 방지 시스템 강화

□ 회사는 전산자료와 전자통신 자료(전자우편, 메신저)를 별도 보관·관리하기 위한 정보유출방지솔루션(DLP*)을 구축하고 있지 않은바,

* Data Loss Prevention

○ DLP를 구축 및 운영하여 내부정보 유출 방지 시스템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

(4) 금융사고 보고 절차 강화

□ 회사는 직원의 수재 혐의가 금융사고 보고 대상에 해당함에도 이를 주요 정보사항 보고 대상으로 판단하여 잘못 보고한 사실이 있는바,

○ 금융사고 보고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보고 절차를 점검 및 보완하여 개선할 필요가 있음

(5) 임직원 성과급 지급 기준 내실화

□ 「임원보수규정」 등에서 임원의 성과급 지급 금액, 시기 및 방법 등은 이사회에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결정권은 대표이사에게 전적으로 부여되어 있는바,

○ 내규에 대표이사의 임원 성과급 결정권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, 대표이사의 임원 성과급에 대한 임의 조정 권한을 일부 제한할 필요가 있음